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2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소병훈·박해철·정성호

허 영·문정복·백혜련

오세희 • 이기헌 • 김교흥

이재관 · 안태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 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

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3호에"를 "제4호에"로, "제4호에"를 "제5호에"로 한다.

3.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제15조의8제3호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4제4호에"를 "제15조의4제5호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5조의4제3호를"을 "제15조의4제4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15조의4제4호를"을 "제15조의4제5호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을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 중 "제15조의4제5호를" 을 "제15조의4제6호를"로 한다.

- 1의2.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사항)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	
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
<u>3.</u> (생 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u>4.</u> <u>제3호에</u> 따라 감염 또는 질	<u>5.</u> 제4호에
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	
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	
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	
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6. 제4호에
그 이송 사실 및 <u>제4호에</u> 따	<u>제5호에</u>
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	
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
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제15조의4제1호부터 <u>제3호까</u><u>지의</u>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지키지 아니한 경우

4. ~ 7. (생략)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 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u>제15조의4제4호에</u>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제15조의8(시정명령)	
1.·2. (현행과 같음) 3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①	
 1.・2. (현행과 같음) 3. <u>제15조의4제5호에</u>	

지 아니한 경우

- ② ~ ⑤ (생 략)
- 제26조(벌칙) ① (생 략)
 - ② <u>제15조의4제3호를</u>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제15조의4제4호를</u>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15</u>조의4제1호 또는 제2호 <u>를 위반한</u> 자

<신 설>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4제4호를
③
1. (현행과 같음)
2. <u>제15조의4제5호를</u>
제27조(과태료) ①
 1 제15주의4제1항름 위바하여
1. <u>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u> 거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 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 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1의2.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 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 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1의2.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 여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u>1의2.</u> <u>제15조의4제5호를</u> 위반하	<u> 1의4.</u> 제15
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	
고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sim 5. ($
②・③ (생 략)	②·③ (Ř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
<u>지 아니한 자</u>
1의4. 제15조의4제6호를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